

2021년 임시주주총회 의사록

2021. 12. 10. 10:30 본점 회의실에서 2021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다.

발행주식총수 1,622,000 주	주주총수 17명
출석주식수 1,550,500 주	출석주주수 15명

의장 대표이사 김대형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주주가 출석하였으므로 본 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.

제1호 의안 : 정관변경 승인의 건

의장은 별지와 같이 정관변경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그 승인을 구하다. 이에 대하여 신중한 토의를 거쳐 출석주주 전원 원안대로 승인하다 (정관 개정 내용 별지 참조)

의결권 행사 주식수 1,550,500주 (출석주주 100% 찬성)

의장은 이상으로 금일 총회의 목적인 의안의 전부를 심의 종료하였으므로 의장은 폐회를 선언하고,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다.

2021. 12. 10.

마스터투자운용 주식회사


의장 대표이사 김 대 형 (법인인감인)



별지. 정관 개정안 신규 대비표

현행	개정
<p>제5조 (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)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오백육십사만주(5,640,000주)로 한다.</p>	<p>제5조 (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)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<u>오천육백사십만주(56,400,000주)</u>로 한다.</p>
<p>제6조 (1주의 금액)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5,000원으로 한다</p>	<p>제6조 (1주의 금액)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<u>500원</u>으로 한다</p>
<p>제8조 (주식의 종류)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.</p>	<p>제8조(주식의 종류) ①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. ②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,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, 상환주식,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.</p>

현행	개정
<p>신설</p>	<p>제8조의2(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) 회사는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보통주식보다 우선 배당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.</p>
<p>신설</p>	<p>제8조의3(전환주식) ①회사는 주주의 청구 혹은 회사의 선택에 따라 주주가 인수한 주식을 보통주식 또는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. ②전환으로 인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. ③회사의 선택에 따라 전환되는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전환할 수 있다.</p>

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 2.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한다. 3. 회사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전환할 수 있다. <p>④주주의 청구에 따라 전환되는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주는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에 대하여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 다만, 전환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, 전환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. 2.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한다.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설</p> 	<p>제8조의4(상환주식) ①회사는 주주의 상환청구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.</p> <p>②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및 이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(있는 경우에 한함)으로 하며, 가산금액은 배당률, 이자율,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발행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 다만,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시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, 조정사유, 조정의 기준일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.</p> <p>③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이</p>

	<p>속하는 회계연도의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 후 3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.</p> <p>④회사는 상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.</p> <p>⑤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 이상의 기간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.</p> <p>⑥주주에게 상환청구권이 부여된 경우 주주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본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.</p> <p>⑦주주가 상환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주식을 본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⑧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의 유가증권(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)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.</p>
<p>신설</p>	<p>제8조의5(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) 회사는 보통주식보다 잔여재산의 분배에 있어서 우선적인 권리를 갖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.</p>